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안 번호	260
----------	-----

제출년월일 : 2018년 11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우리시는 '16년 택시운송원가를 분석한 결과, '13년 대비 LPG가격 30% 하락 등을 근거로 '17년 4월에 요금 인상요인이 없는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이후 LPG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운송원가 영향요인의 큰 변화가 발생함
- 운송원가 증가에 따른 택시업계의 요금조정 재검토 요구와 택시정책위원회의 요금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종합해 보면 택시기사 유출로 경영이 어려운 택시업계와 열악한 운수종사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하였음
- '18년 기준으로 운송원가를 재분석한 결과, 원가기준으로 6.78%의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사민전정 협의체에서 우리시에 권고한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의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도 고려하였음
- 금번 요금인상은 운송원가 보전뿐만 아니라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요금도 포함하여 요금조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처우개선 인상분이 확실히 운수종사자에게 배분되도록 담보하는 업무협약을 서울시, 254개 택시업체 등과 체결하였으며 승차거부 근절 등 대시민 서비스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하였음
- 이러한 제반 요건을 고려하여 택시기사 처우개선 및 대시민 서비스 개선방안과 함께 요금조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

2. 주요내용 : “별 첨” 참조

3. 참고사항(관련법령)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

-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3조(운임·요율 체계 등) 제3호

- 가. 운임·요율은 기본운임·거리운임·시간운임을 기본체계로 하고 운행형태, 지역적 특성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구간 정액운임제, 시간 정액운임제 등 별도의 운임체계를 정할 수 있다.
- 나. 운임·요율의 세부산정기준, 시계외 할증, 운행시간대별 할인·할증, 복합 할증 등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견청취)

- ① 시장은 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별 첨 : 택시요금 조정계획(안) 1부. 끝.

별 첨

I · SEOUL · U
덕와 너의 서울

택시요금 조정계획(안)

2018. 11. 16

도 시 교 통 본 부

(택시물류과)

택시요금 조정계획(안)

I

요금조정 필요성 및 기본방향

□ 요금조정 필요성

- '13년 이후 물가 상승('13년 대비 7.2%↑), LPG 가격인상('16년 대비 19.1%↑), 최저임금 증가('18년 16.4%↑)로 운송원가 영향요인에 큰 변화 발생
- 열악한 근무 조건과 낮은 수입으로 인해 대시민 서비스질 저하 및 지속적인 운전자 이탈('14년 대비 16.8%↓)로 운행대수 감소
 - 일평균 '14년 대비 운전자 5,324명(16.8%)↓, 운행대수 1,191대(5.9%)↓

《 택시요금 조정관련 노사민전정 협의체 권고사항 》

- ① 요금인상폭 = 운송원가 보전분 +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분(정책요금)
- ② 처우개선은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285만원) 충족 ⇒ 시장이 결정
- ③ 심야시간 탄력요금제는 24~04에서 23~04시로 1시간 조정

□ 요금조정 기본방향

-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수준(노사민전정협의체 권고사항)과 확정된 운송원가를 반영하여 적정요금 수준 도출
 - '13년 이후 5년 이상 동결된 택시요금의 현실화로 운송원가 적자분 보전
- 열악한 택시운수종사자의 수입증가를 통한 처우개선이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 조성
- 심야 단거리 승차거부를 해소하고 택시공급확대를 위한 심야요금 조정
- '09년 이후 조정이 미미했던 시간·거리요금 조정
 - '13년 요금조정시 시간·거리요금은 거리요금만 2m(144m→142m) 단축

II

운송원가 분석결과

1 실적운송원가 분석개요

- 분석대상 : 법인택시 254개사
- 분석자료 : 택시회사 운행·경영실태 3년간('13~'15년) 자료 조사·분석
 - 운행자료 : 택시정보시스템(STIS) 자료 ('15.12 ~ '16.11)
 - 경영자료 : 재무제표 및 결산서, 임금협정서(단체협약), 각종 지출 증빙자료 (유류비, 차량보험료, 차량구입비, 5대 보험료, 관리직 인건비 등)
- 분석방법 : 택시회사 제출자료 중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 및 결산서 등 자료 활용
- 원가산출 : '15년 실적운송원가를 토대로 '16~'18년간의 물가상승률, 유류비 인상 등을 반영하여 실적운송원가를 갱신함

2 실적운송원가 분석결과

- '15년 실적 운송원가 : 292,714원/대/일
- '16년 실적 운송원가 : 290,012원/대/일
 - 운전직 인건비는 임금협정서 변동이 없어 '15년 실적 운송원가 인건비 유지
 - 복리후생비 등은 물가상승률 1.2%, 유류비는 LPG 판매단가(유가보조금 반영) 적용
- '18년 실적 운송원가 : 331,799원/대/일
 - 운전직 인건비 '17년 2.61%, '18년 16.38%(최저임금인상률) 적용
 - 복리후생비 등은 물가상승률 2.0%, 유류비는 LPG 판매단가(유가보조금 반영) 적용
 - 운송원가 331,799원/대/일, 운송수입 310,736원/대/일 ⇨ 21,063원 적자

구 분	운송수입 ①	운송원가 ②	운송수지 ③ = ① - ②	인상요인률 ③ / ①
1일 대당	310,736원	331,799원	-21,063원	6.78%

3 요금산정 기준원가 분석결과 (중형택시 기준)

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18년 실적원가 : 331,799원/대/일

- '18년 기준운송원가 중 적자발생분(21,063원/대/일)을 보전한 운송원가

②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 추가 ※ 수입증가분 8:2 배분 적용시

- 운송원가 보전시 : 월 242만원 (고정급여 150 + 비공식수입 75 + 부가세환급 17)

-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시 : 월 285만원 ('19년 기준 10,148원 × 10.8시간 × 26일)

※ 노사민전정 협의체 권고 : '서울시 생활임금' 충족하는 범위에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구 분	대 안 설 명	운 송 수 지
조정안	처우개선을 위한 인상분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	-36,697 원/대/일

〈 노사간 합의서 체결내용 (8.23) 〉

- 택시요금 인상 후 6개월 동안 납입기준금 동결
- 납입기준금 동결 후 실제 수입금 증가분 만큼 납입기준금 인상
- 납입기준금 인상액 중 보험료 등 간접비를 제외한 전액 임금에 반영·지급

③ 요금산정 기준원가 (①+②)

구 분	운송수입	운송원가 (①+②)	운송수지	인상요인률
조 정 안	310,736원	368,496원	-57,760원 원가보전 -21,063 처우개선 -36,697	18.59%

Ⅲ

정책대안별 운송원가 및 수입의 증감효과 (중형택시 기준)

운송원가 증가(요금조정 '인상') 요인

- 원가보전 : 실적원가('18년 기준) 적자 발생액 보전
 - 운송원가 21,063원/대/일 증가 (479원 인상요인)
- 정책비용(처우개선비) :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 보장 → 36,697원/대/일 증가 (834원 인상요인)

운송수입 증가(요금조정 '인하') 요인

- 심야요금 조정 : 운송수입 4,622원/대/일 증가 (105원 인하여인)
 - 심야 공급대수 확대를 위한 할증시간 연장 : 0~4시 → 23~4시
 - 심야 단거리 승차거부 방지를 위한 심야 기본거리 연장 : 2km → 3km
 - 심야 기본요금 내역 : 2km분 (주간 기본요금×120%) + 1km분 (800원)
- 시간·거리요금 인상 : 시간·거리 단축하되 기본요금 내려 수입변화 없음
 - 100원당 거리는 142m → 132m (10m↓), 시간은 35초 → 31초 (4초↓)

운송수지 및 요금영향 효과

구	분	운 송 수 지	요금영향 효과	비 고
'18년 원가기준 적자 보전		-21,063 원/대/일	+479원	운송원가 증가
처우개선 정책비용		-36,697 원/대/일	+834원	운송원가 증가
심 야 요 금 조 정		+4,622 원/대/일	-105원	운송수입 증가

※ 요금 영향효과 = 운송수지 / 1일 대당 영업건수 (44건/일)

IV 적정요금 대안 검토

1. 중형택시

□ 적용내용 : 원가보전 + 심야요금조정 + 처우개선 (285만원)

- 예상 운송수입금 : 315,358원/대/일 (기존수입 310,736 + 심야수입증가 4,622)
 - 심야시간 요금조정으로 인해 운송수입금 4,622원/대/일 증가
- 기준원가 : 368,496원/대/일 (요금산정 기준원가)
 - 기준원가 대비 운송수입금 53,138원/대/일(기준원가-예상수입) 증가 필요
- 요금 인상액 : 기본요금 800원 인상 (인상률 17.10%)
 - 거리·시간 조정 : 100원당 142m → 132m (10m↓), 35초 → 31초 (4초↓)

□ 요금조정안 세부내용

- 인상액(인상률 17.1%) : 기본요금 기준 1,200원 (원가보전 500원 + 정책요금 700원)
 -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분 (73%) = 정책요금 + 원가보전분 중 운전자 임금
 ⇒ [처우개선분 산정내역] 73% = 58% (7/12) + 15% (5/12 × 37%)
 - 시의회 의견청취 등 과정에서 요금 인상률 감소시 처우개선분 73%는 계속 보장

구 분		현 행	조 정 안 (기본요금 기준 1,200원↑)
주간	기본요금	3,000원	3,800원
	기본거리	2km	2km
	거리요금	100원 당 142m	100원 당 132m
	시간요금	100원 당 35초	100원 당 31초
심 야 주간대비 20%할증	기본요금	3,600원	5,400원 (2km시 4,560원)
	기본거리	2km	3km
	거리요금	120원 당 142m	120원 당 132m
	시간요금	120원 당 35초	120원 당 31초
	적용시간	0~4시	23~04시
요금 조정 요인	원가측면	-	① 기준원가 적자보전 (6.78%) ② 처우개선 (11.81%)
	수입측면	-	③ 심야요금 조정 (-1.49%)
인상요인률 (요금영향)		-	17.10% (1,208원↑)

2. 대형·모범택시

구 분		현 행	조정안 (인상률 13.9%)
기본요금		3km 5,000원	3km 6,500원
이후 요금	거리요금	164m당 200원	151m당 200원
	시간요금	39초당 200원	36초당 200원
할 증		할증 없음 (시계외, 심야)	현행유지

3. 고급·소형택시

- 고급택시 : 자율신고 요금제로 기준 및 요율을 정하지 않음
- 소형택시 : 현재 운행하는 소형택시가 없어 요금제 삭제

4. 외국인관광택시

- 요금제 : 미터요금(중형·대형·모범 동일), 구간요금(인천공항↔서울), 대절요금(관광 등)
- 할증기준 : [외국인 탑승] 최대 40% = 외국인 할증 20% + 기타 20% (심야·시계)
[일반인 탑승] 일반택시 미터기 요금 적용 → 심야 20%, 시계 20%
- 조 정 안 : [구간] 권역 세분화(3→5개), 요금인상 : 구간별 1~2만원 인상
[대절] 요금인상 : 대절시간별 1~5만원 인상
[할증] 기존 할증기준 유지

현 행 ⇒ '09년 출범당시 요금이 현재까지 유지

구 분		내 용					
정 액 요 금	구 요 간 금	권역(인천공항 기점)	A권역(50km)	B권역(60km)	C권역(70km)		
		중 형	55,000원	65,000원	75,000원		
		대형·모범	80,000원	95,000원	110,000원		
	대 요 절 금	구 분	3시간	5시간	8시간	10시간	1일
		중 형	50,000원	80,000원	125,000원	150,000원	200,000원
		대형·모범	70,000원	100,000원	145,000원	175,000원	200,000원
미터요금		외국인 탑승시 일반요금에 20% 할증 (시계·심야 등 중복할증 최대 40%허용)					

조 정 안

구 분		요 금 부 과 기 준	중형택시	대형·모범택시
구 간 요 금	A지역 (평균 50km)	강서	65,000원	95,000원
	B지역 (평균 60km)	양천, 구로, 영등포, 마포, 은평, 서대문	70,000원	100,000원
	C지역 (평균 65km)	금천, 관악, 동작, 용산, 중구, 종로	80,000원	110,000원
	D지역 (평균 70km)	서초, 강남, 성동, 동대문, 성북, 강북	85,000원	120,000원
	E지역 (70km 이상)	송파, 강동, 광진, 중랑, 노원, 도봉	90,000원	130,000원

구 분		3시간	5시간	8시간	10시간	1일
대 절 요 금	중 형	60,000원	100,000원	150,000원	180,000원	230,000원
	대형·모범	80,000원	120,000원	170,000원	200,000원	250,000원

5. 할증요금

- 심야할증 시간에 시계외 운행시 중복할증(40%) 적용 가능

구 분		현 행	조 정	비 고
시계외요금	할 증 율	20%	현행 유지	통합사업구역 및 공동사업구역 제외
	시행지역	시경계를 벗어나는 지역	현행 유지	
심야요금	할 증 율	20%	현행 유지	1시간 연장
	시행시간	24시 ~ 익일 04시	23시~ 익일 04시	

6. 기타 부가요금

- 호출료 : 기존 체계 유지하되 다양한 서비스 도입을 위한 호출료 인상
 - 호출료는 택시 부가요금으로 인상률 산정시에는 포함하지 않음
 - 일반 호출료 : 운수종사자가 현장에서 전액 받는 호출료로 승인 불필요
 - 플랫폼 호출료 : 서울시가 승인한 서비스형태 및 플랫폼 등에만 적용가능

구 분	현 행 (A)	조 정 (B)	
		일반 호출료	플랫폼 호출료
주간 (심야할증 비적용 시간)	1,000원	1,000원	2,000원
야간 (심야할증 시간)	2,000원	2,000원	3,000원

- 통행료 : 승객의 요구(수락)에 따라 유료도로 통행시 승객이 실비 부담

1.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담보방안

□ 운수종사자 급여증대 및 이행담보

- 요금인상 후 납입기준금 6개월 동결 → 업무협약서, 사업개선명령
 - 인상 후 단기적 수요감소로 인한 운전자 수입 감소를 고려하여 기준금 동결
- 기준금 동결 후 최소경영비용 제외하고 운전자 수입으로 배분 → 업무협약서
 - 요금인상으로 수입증가분 중 보험료 등 간접비를 제외하고 처우개선에 활용
 - 간접비는 20% 이내로 하고 효력기간은 차기요금조정시까지로 함
 - '20년 이후 노사간 합의로 배분율 조정가능하나 처우개선분(73%)은 계속 보장
- 운수종사자 근로 및 급여조건 공개 및 제출
 - 운전자가 근로조건 등을 확인하고 회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공개 사업개선명령

《 처우개선 이행담보방안 ⇒ 업무협약서 체결 》

- 체결주체 : 서울시, 택시회사 254개사, 한국스마트카드
 - 당초 업무협약서 내용 ('18. 9.18.체결완료)
 - 효력기간 : 택시요금인상 ~ 2019년 12월 31일
 - 택시요금 인상 후 6개월 동안 납입기준금 동결
 - 납입기준금 동결 후 수입금 증가분 만큼 납입기준금 인상
 - 납입기준금 인상액 중 간접비 제외(20% 이내)한 전액 임금에 반영·지급
 - 내용보완을 위한 부속협약서 ('18. 11. 15 법인조합 제출 완료)
 - 효력기간 연장 : '19년말까지 → 차기 택시요금 조정시
 - 배분조건 추가 : '20년 이후 노사 합의에 의한 배분율 조정가능하나 처우 개선분은 계속 보장 (수입증가분의 최소 73%)
 - 처우개선 미준수시 제재수단 : 업무협약서
 - 정책요금 인상분 지급을 즉각 보류 조치 (서울시 → KSCC)
 - 30일내 미조치시 보류금액은 서울시로 양도되고 시가 직접 운전자에게 지급
- ※ 처우개선 미준수시 사업개선명령 위반 처분 및 카드수수료 등 재정지원 중단

□ 기타 운전자 처우개선 방안

- A.I(인공지능) 택시 도입을 통한 수입증대
 - 택시정보시스템(STIS) 빅데이터 활용 실시간 택시수요정보 예측 및 제공
- 폭행사건 등 방지 위해 희망 운전자 대상으로 보호격벽 설치
 - '19년 시범사업 예정 : 25,000천원(250대×100천원), 시50%-사업자50%
- (업계자구노력) 청장년 신규취업자 납입기준금 인하
 - 택시업계 최초 입사 후 1년 이내 운수종사자(25~36세)에게 1~3만원 기준금 인하
 - ※ 지원금액 확보는 고용노동부 청년고용활성화 지원정책과 연계추진
- 택시기사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퇴직연금제 도입 추진
 -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맡기고 근로자 퇴직시 연금으로 주는 제도

2. 대시민 서비스 개선방안

□ 택시 승차거부 근절을 위한 행정처분 강화

- 자치구 승차거부 처분권한 모두 시로 환수하여 처분실효성 제고
 - 승차거부 운전자 신분상 처분 (경고/자격정지30일/자격취소, 과태료 20/40/60만원)
- 사업일부정지 처분권 환수 후 승차거부 위반지수 초과회사 처분
 - 위반지수 1 도달 39개사('18.7월 기준) ⇒ 위반차량의 2배수, 사업일부정지 60일
- 1차 위반행위에 대한 운전자 처분강화 : 경고 → 자격정지 10일
 - 개정건의 완료('18.8.21, 국토부) ⇒ 국토부도 개정 필요성 공감
- 삼진아웃 운전자의 택시운전자격 취득제한 강화 : 1년 → 5년
 -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의 제한기준을 준용한 여객법 개정 건의 ('18.8.30.)

□ 심야 택시수급불균형 문제해소를 위한 공급대책 추진

- 심야 택시공급확대를 위한 개인택시 심야운행 의무화

구 분	9조 개인택시 (2,982대)	일반 개인택시
의무운행 시간	23~02시	00~01시
의무운행 기준	평일기준 월 10일 이상	평일기준 월 5회 이상

- 개인택시 무단휴업 사업자 모니터링 강화로 운행 유도
 - 개인용도 사용 또는 무단운휴시 → 사업면허취소 및 유가보조금 지원 중단
- 심야 택시공급 확대를 위한 매주 금요일 심야 부제해제 정례화
 - 승차난 가장 심각한 매주 금요일 23시 ~ 익일 01시 부제해제로 공급 확대
- 다양한 승차거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승차거부 지속발생시 올빼미버스 확충, 심야 특수서비스(심야운행 택시 등) 등 대체수단 도입 검토
 - 올빼미버스 확충, 심야 특수서비스(심야운행택시 등) 및 공유수단 등 도입 검토

□ 택시승차방법 근본적 개선

- 시민이 앱을 통해 빈 택시를 직접 선택 이용하는 문화로의 전환 추진
 - (기존) 거리에서 손을 들어 택시이용 ⇒ (개선) 공공앱을 통해 택시 선택 이용
 - 현재 운영 중인 앱(한국스마트카드 지브로 등)을 서울시 공공앱으로 지정·운영
 - 목적지 미표출 조건 민간앱에 STIS 공차정보 제공, 앱에 의한 승차거부 근절 추진
- 앱을 통한 승차거부 처분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 공공앱을 통해 호출하였음에도 수락·배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승차거부로 처분

□ 기타 서비스 개선방안

- 범죄 경력자, 고령자 등 운수종사자 관리 강화
 - 입사전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 법개정 추진, 고령자 자격유지검사제도 시행('19.2~)
- 택시가맹사업자 도입을 통한 신규 택시서비스 개발
 - 시민들의 요구에 대응하는 예약택시, 펫택시 등 새로운 택시서비스 제공
- 시민을 위협하는 총알택시 근절
 - 택시차량에 120km/h이하로 속도제한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개정 추진
- ICT 기술 활용 : 앱미터기 도입, 시계외 자동할증, 승차거부 신고앱 개발 등
 - 앱미터기 : 기계식 미터기 → GPS기반 미터기로 교체, 다양한 서비스 제공 가능
 - 시계외 자동할증시스템 도입 : 수기조작에 따른 시계외 부당요금의 근본적 해결
- 교통약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울형 택시모델 개발
 - 넓은 실내공간과 휠체어 탑승 가능한 트렁크 확보하여 교통약자 배려
 - 런던의 TX4택시, 도쿄의 UD택시처럼 서울형 택시전용모델 추진

VI 추진 일정

□ 계획수립 · 시의회 의견청취

① 업무협약서 체결	9. 14(금)	◦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반영	◦ 처우개선 미준수시 정책요금 인상분 미지급
② 노사민전정 협의체 자문	10. 2(화)	◦ 처우개선 및 서비스개선 논의	◦ 부시장 주재
③ 시장 보고	10. 17(수)	◦ 요금조정계획(안) 보고	
④ 대시민 공청회	10. 24(수)	◦ 요금조정계획(안) 보고 ◦ 처우개선 및 서비스개선 방안	◦ 서울연구원 대강당
⑤ 요금조정계획(안) 수립	11. 15(목)	◦ 도시교통본부장 방침	
⑥ 시의원 사전 설명	10.10~11.16	◦ 교통위 의원, 의장단, 교섭단체 대표 등 집행부 사전 설명 및 동의	
⑦ 시의회 의견청취안 제출	11.16(금)	◦ 교통상임위 개최 (11.26. 예정)	
⑧ 보도자료 제출	11.18(일)	◦ 택시요금조정계획(안)	
⑨ 택시정책위원회 자문	생략	◦ 택시정책위원회를 확대구성한 노사민전정 협의체 자문으로 대체 ※ 노사민전정 협의체 구성방침 (택시물류과-16175, 2017.11.17)	
⑩ 시의회 본회의	11.1~12.22	◦ 의견청취(안) 의결	

□ 물가대책위원회 · 요금조정 확정

※ D : 시의회 의견청취 완료일

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요청	D+2	◦ 택시요금조정계획 제출	◦ 본회의 완료 후 즉시 제출
② 시민단체 사전 설명	D+2 ~ D+4	◦ 물대위 외부인원(18명) 및 시민단체 방문 사전설명	◦ 도시교통본부 과장급 이상 방문
③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D+5		◦ 위원 과반 참석이 불가할 경우 연기
④ 시장 보고	D+9	◦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택시요금조정계획 보고	

※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 상정시기를 고려하여 결정

□ 요금조정 발표

① 기자설명회 개최	D+12	◦ 요금조정 및 서비스, 택시 기사 처우개선 관련	
② 택시요금 조정 시행	D+15		

※ 세부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붙임1

'18년 실적운송원가 세부내역

○ '16년 실적운송원가 대비 운전직 인건비 24,164원 ↑, 연료비 10,599원 ↑

구 분	'15년 실적운송원가	'16년 실적운송원가	'18년 기준운송원가		
			금 액	구성비	
운행비	소 계	227,445	223,576	258,349	77.9%
	① 운전직 인건비	192,331	192,402	216,566	65.3%
	② 연료비	33,750	29,780	40,379	12.2%
	③ 타이어비	1,364	1,394	1,404	0.4%
차량관리비	소 계	37,817	38,374	40,145	12.1%
	④ 정비관리비	4,703	4,862	5,278	1.6%
	⑤ 차량유지비	7,403	7,492	7,795	2.3%
	⑥ 차량 보험료	11,168	11,302	11,759	3.5%
	⑦ 제세공과금	1,553	1,572	1,636	0.5%
	⑧ 차량감가상각비	8,442	8,543	8,888	2.7%
	⑨ 차고지비	4,548	4,603	4,789	1.4%
일반관리비	소 계	23,074	23,684	25,340	7.6%
	⑩ 임직원 인건비	14,707	15,216	16,530	5.0%
	⑪ 기타경비	8,367	8,468	8,810	2.7%
⑫ 적정이윤	4,378	4,378	7,965	2.4%	
운송원가 총합계(B)		292,714	290,012	331,799	100.0%

○ '18년 운송원가 331,799원/대/일, 운송수입 310,736원/대/일

⇒ 1일 대당 21,063원 적자

구 분	운송수입 ①	운송원가 ②	운송수지 ③ = ① - ②	인상요인률 ③ / ①
1일 대당	310,736원	331,799원	-21,063원	6.78%

붙임2

전국 주요 시·도 택시요금 (중형택시)

지 역		기본요금 (2km까지)	주행요금 (100원)	시간요금 (15km/h이하 주행시100원)	심야(0~4시) 및 사업구역외운행	시행일자
서울	종전	2,400원	144m당	35초당	20% 할증	'13.10.12 (10.9% 인상)
	조정	3,000원	142m당	35초당		
부산	종전	2,800원	143m당	34초당	심야 20% 사업구역외 30%	'17.09.01 (13.72% 인상)
	조정	3,300원	133m당	34초당		
대구	종전	2,800원	144m당	34초당	20% 할증	'18.11.01 (14.1% 인상)
	조정	3,300원	134m당	32초당		
인천	종전	2,400원	148m당	37초당	"	'13.12.09 (17.31% 인상)
	조정	3,000원	144m당	35초당		
광주	종전	2,200원	150m당	36초당	"	'13.03.29 (17.6% 인상)
	조정	2,800원	145m당	35초당		
대전	종전	2,300원	153m당	36초당	"	'13.01.15 (16.9% 인상)
	조정	2,800원	140m당	34초당		
울산	종전	2,200원	141m당	34초당	"	'13.01.01 (19.19% 인상)
	조정	2,800원	125m당	30초당		
경기	종전	2,300원	144m당	35초당	"	'13.10.19 (17.7% 인상)
	조정	3,000원	144m당	35초당		
강원	종전	2,200원	165m당	40초당	"	'13.05.15 (23.17% 인상)
	조정	2,800원	152m당	40초당		
충북	종전	2,200원	150m당	36초당	"	'13.02.15 (19.5% 인상)
	조정	2,800원	143m당	34초당		
충남	종전	2,300원	163m당	39초당	"	'13.01.09 (15.8% 인상)
	조정	2,800원	150m당	37초당		
전북	종전	2,200원	150m당	36초당	"	'13.03.01 (16.21% 인상)
	조정	2,800원	148m당	35초당		
전남	종전	2,300원	164m당	39초당	"	'13.04.05 (18.50% 인상)
	조정	2,800원	146m당	35초당		
경북	종전	2,200원	145m당	35초당	"	'13.02.20 (18.00% 인상)
	조정	2,800원	139m당	33초당		
경남	종전	2,200원	143m당	34초당	"	'13.07.01 (16.97% 인상)
	조정	2,800원	143m당	34초당		
제주	종전	2,200원	146m당	38초당	"	'13.07.01 (19.0% 인상)
	조정	2,800원	144m당	35초당		

붙임3 대시민 공청회 개최결과

□ 공청회 개요

- 제 목 : 택시요금정책 및 서비스개선 공청회
- 일 시 : 2018. 10.24.(수) 14:00 ~ 17:00
- 장 소 : 서울연구원 2층 대회의실
- 발제(토론)자 : 12명 (전문가 4, 시민단체 2, 언론 2, 택시업계 4)
 - 발제1 : 서울시 택시운송원가 산정(김일동 한울회계법인 상무)
 - 발제2 : 서울시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방안(안기정 서울연구원 박사)
 - 발제3 :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안(지우선 서울시 택시물류과장)

□ 개최결과

구 분	주 요 토 론 내 용
업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풀 등 대외요인으로 업계 스스로 서비스를 개선할 수 밖에 없는 상황 • 외국사례와 같이 심야할증 시간을 22시부터 적용을 요구함 • 요금인상 수준은 요금조정 2안과 3안 절충안으로 인상 요구
토 론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금인상시 마다 서비스개선 말했으나 시민들은 체감하지 못함 • 요금인상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요금조정 2안이 합리적으로 판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금인상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요금조정 2안이 합리적으로 판단 • 충격 최소화를 위해 2년마다 택시요금 조정요인 검토 및 인상 필요 • 금번 요금인상 폭이 큰 만큼 반드시 서비스 개선은 확실히 담보되어야함 • 이번엔 승차거부가 확실히 근절되어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음 • 서비스 및 처우개선 방안과 이의 담보방안을 충분히 홍보해야함



붙임4

택시요금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 : 0.053%

- 12개 분류 460개 대표품목 중 택시 비중 1,000점 중 3.1점

요금인상률	비교시점 품목지수	기준시점 품목지수	품 목 가중치	기 여 도
17.10%	1.1710	1.000	3.1	0.053%

계산방법

- 개별품고의 변동이 물가 총지수의 변동률에 기여하는 정도

$$\begin{aligned} \text{물가영향도} &= \frac{\text{비교시점 품목지수} - \text{기준시점 품목지수}}{\text{기준시점 총지수}} \times \frac{\text{품목 가중치}}{\text{전체가중치}} \times 100 \\ &= \frac{(1.171 - 1)}{100} \times \frac{3.1}{1,000} \times 100 = 0.053\% \end{aligned}$$